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66 발의연월일: 2020. 11. 12.

발 의 자 : 아수잔비 · 윤재갑 · 우원식

어기구 · 김승원 · 허 영

배진교 · 김경협 · 심상정

윤미향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실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들이 여럿 존재하고 있음.

이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 태근로종사자,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「고용보험법」을 개정하고,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(안 제48조의3 신설)
 - 1)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함.
 - 2)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고,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수 있도록 함.
- 나.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의 신고 및 보험업무의 대행(안 제48조의4 신설)
 - 1)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노 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·주소, 노무 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 한 날 또는 종료한 날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함.
 - 2)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「고용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 에는 해당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

및 고용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526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"예술인(이하 "예술인"이라한다)"을 "예술인(이하 "예술인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(이하 "노무제공자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단서 중 "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본다"를 "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"로 한다.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9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사업주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10제1항 전단 중 "근로자 또는 예술인"을 "근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사업주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10제2항 중 "근로자 또는 예술인"을 "근로 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·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
- 2.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(이 하 "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 때
- 3.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(이하 "노무 제공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 때
-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· 예술인·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,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

역 관련 계약·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1.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
- 2.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
- 3.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10제5항 중 "근로자 또는 예술인이"를 "근 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·원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.
- 1. 「고용보험법」 제15조, 제77조의2제3항, 제77조의5제1항 또는 제77 조의10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
- 2. 제48조의4제6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

제21조의2제3항 전단 중 "제28조 및 제29조"를 "제27조의2, 제27조의3, 제28조,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, 제29조, 제29조의2, 제29조의3 및 제30조"로 한다.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- 제48조의3(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) ①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6 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(이하 "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"라 한다)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.
 - 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「소득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.
 - ③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「고용보험법」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④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.
 - 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

야 한다.

- ⑥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.
- 1.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·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 제7항, 제6조제3항, 제7조제1호, 제10조(제2호는 제외한다), 제11조제 1항(제2호는 제외한다) 및 제1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근로자"는 "근로자,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"으로, "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"는 "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"로, "제5조제1항"은 "제1항"으로 본다.
- 2.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·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, 제 13조제1항제1호·제2항(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)·제4항제2호(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), 제15조제1항, 제 16조의2제1항, 제16조의4,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, 제16조의9 (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), 제16조의11,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근로자"는 "노무제공자"로, "고용보험료율"은 "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"로 본다.
- 3.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, 경감,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,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·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, 제21조의2, 제22조의2(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, 제23조(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), 제25조(제16조의3, 제16조의6, 제16조의7,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

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, 제26조의2, 제27조, 제27조의2, 제27조의3,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, 제29조, 제29조의2, 제29조의3, 제30조,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근로자"는 "노무제공자"로 본다.

- 4.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, 자료제공의 요청, 보고,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 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(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)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근로자"는 "노무제공자"로 본다.
- 제48조의4(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의 신고 및 보험업무의 대행) ①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(이하 "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"라 한다)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같은 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(이하 "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이용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 - 1.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
 - 2.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
 - 3.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 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

- 4.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 횟수 및 그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(이하 "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.
- 1.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6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업무
- 2.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 및 원천공제에 관한 업무
- ④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계약의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제48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용을 해당 노무

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도 알려야 한다.

- ⑥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제3항 각 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, 고용보험료의 납부 또는 원천공제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 자의 피보험자격 신고, 고용보험료의 납부 또는 원천공제를 한 것으로 본다.
- 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원천공 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 업주에게 그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.
- ⑧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제3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단이 제25조에 따른 그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.
- ⑨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대행에 관한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.이 경우 제45조를 준용한다.
- 1.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: 제3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

- 2. 공단의 경우: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관계 서류의 조사
-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① 제1항부터 제5항까지,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자 등의 신고 및 통보, 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통보, 보고 등의 요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9조의6 전단 중 "제48조의2제8항제3호"를 "제48 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"로 한다.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중 "제48조의2제8항제1호"를 각각 "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48조의2제8항제3호"를 "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 제3호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(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)"를 "(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4 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48조의4제9항제1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(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)"를 "(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48조의4제9항제2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(월별보험료의 산정)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(이하 "월 별보험료"라 한다)는 근로자.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1 항에 해당하는 예술인(이하 "예 술인"이라 한다)의 개인별 월평 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 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 다만, 월평 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본다.

② (생략)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9(보험료의 정산) ① 공 개 정 안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(월별보험료의 산정) ① ----- 예술인(이하"예 술인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 무제공자(이하 "노무제공자"라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 로 보아 산정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9(보험료의 정산) ① --- 단은 제16조의10제1항 ·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 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 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 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 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.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 험료납부자가 사업주 등의 보험 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 에는 해당 보험료는 제외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
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신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제16조의10(보수총액 등의 신고) 제
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
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
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
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
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험료
납부자가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
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
외한다.

| <u>o</u>] |
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경우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 |
| 험료납부자 또는 제48조의4제3 |
| 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에 관한 |
|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사업주, |
|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 |
| 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 |
| 는 제외한다. |
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
|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|
|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|
|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|
| 16조의10(보수총액 등의 신고) |
| ① 근로자, |
|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|
| |
| |
|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험료 |
| 납부자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|
| 따른 보험료 납부에 관한 업무 |
| 를 대행하는 자가 사업주, 예술 |

-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·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 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<u>근로자 또는 예</u> 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(이하 "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하는 경우 그 근로자, 예술인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그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| 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| 를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> | 줴 |
| 외한다. | |

| 2 | | | |
|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<u>근로자,</u> | 예술인 |
| 또는 | 노무제공 | <u>'ス}</u> | |

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 · 예술인 ·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 ·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있다.

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
 그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
 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(이하 "문화예술용역 ④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, 고용관계 또는 계약의 종료일 등을 그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또는 그 예술인과의 계약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⑤ 사업주는 <u>근로자 또는 예술</u> 인이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<u>관련 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</u> <u>한 때</u>

- 3.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6제 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(이 하 "노무제공계약"이라 한다) 을 체결한 때
-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・예술인・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,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・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 1.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
- 2.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을 종료한 때
- 3.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 을 종료한 때
- ⑤ -----근로자, 예술인 또는노무제공자가------------------

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야 하다.

- ⑥ (생략)
- 인이 「고용보험법」 제15조, 제77조의2제3항, 제77조의5제1 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.

⑧ (생략)

(생 략)

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 ③ -----는 제27조,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건강보험공 단"은 "공단"으로 본다.

- ⑥ (현행과 같음)
- 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를 생략할 수 있다.
 - 1. 「고용보험법」 제15조, 제77 조의2제3항, 제77조의5제1항, 제77조의10제1항에 따라 제3 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신고한 경우
 - 2. 제48조의4제6항에 따라 노무 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 한 것으로 보는 경우
 - ⑧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2(지원금의 환수) ① • ② | 제21조의2(지원금의 환수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

----- 제27조의2, 제27조의 3, 제28조, 제28조의2부터 제28 조의7까지, 제29조, 제29조의2, 제29조의3 및 제30조-----

④ (생략)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<신 설>

④ (현행과 같음)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
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
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제48조의3(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등례) ① 「고용보험법」 제
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(이하"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"라 한다)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.

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「소 득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사업소 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. ③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 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 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「고용 보험법」 제7조에 따른 고용보 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④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.
- 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제 4항 후단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 에는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- ⑤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.
- 1.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·소멸에 관하여 는 제5조제7항, 제6조제3항, 제7조제1호, 제10조(제2호는 제외한다), 제11조제1항(제2호 는 제외한다) 및 제12조를 준 용한다. 이 경우 "근로자"는

"근로자,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"으로, "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"는 "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종료되었을 때"로, "제5조제1항"은 "제1항"으로 본다.

- 2.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료의 산정・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, 제13조제1항제1호 • 제2 항(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) • 제4항 제2호(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 외한다), 제15조제1항, 제16조 의2제1항, 제16조의4, 제16조의 6부터 제16조의8까지, 제16조 의9(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), 제16조의11, 제16조의12 및 제 18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 우 "근로자"는 "노무제공자" 로, "고용보험료율"은 "제48조 의3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"로 본다.
- 3.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료의 지원, 경감, 과납액의 충 당과 반환, 고용보험료와 연체 금의 징수·독촉 등에 관하여

는 제21조, 제21조의2, 제22조 의2(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은 제외한다), 제23조(제1항제 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 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 다), 제25조(제16조의3, 제16 조의6, 제16조의7,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 으로 한정한다), 제26조의2, 제 27조, 제27조의2, 제27조의3, 제28조, 제28조의2부터 제28 조의7까지, 제29조, 제29조의2, 제29조의3, 제30조,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근로자"는 "노무제공자"로 본다.

4.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, 자료제공의 요청, 보고,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 조부터 제45조까지(제43조제2 항은 제외한다)의 규정을 준 용한다. 이 경우 "근로자"는 "노무제공자"로 본다.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

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<신 설>

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|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4(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의 신고 및 보험업무의 대행) ①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7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(이하 "노무제공플랫폼사 업자"라 한다)는 노무제공사업 의 사업주와 같은 항에 따른 노 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 약(이하 "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 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이용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1.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 명과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
- 2.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 당 사업에 「고용보험법」 제 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 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

- 3.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소재지)
- 4.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
 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
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 횟수 및 그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(이하 "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.
- 1.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6

 및
 제77조의10제1항에
 따른

 노무제공자의
 피보험자격
 신

 고에
 관한
 업무

- 2.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 및 원천공제에관한 업무
- ④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계약의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한다.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제 48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에게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용을 해당 노무제공플랫 폼사업자에게도 알려야 한다.
- ⑥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 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에 따 라 제3항 각 호에 따른 노무제

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, 고용 보험료의 납부 또는 원천공제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, 고용보험료의 납부 또는 원천공제를 한 것으 로 본다.

- 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 3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 공사업의 사업주에게 그 원천공 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.
- ⑧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제3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단이제25조에 따른 그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.
- ⑨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대행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하여 필

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요구하거나 조사 등을할수있다.이 경우 제45조를 준용한다.

1.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: 제3항 각 호의 업무와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서류의 제출 요구의 제출 요구

- 2. 공단의 경우: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 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관계 서류의 조사
-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 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 여 보험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 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① 제1항부터 제5항까지,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 폼사업자 등의 신고 및 통보, 공 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 청 및 통보, 보고 등의 요구 및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
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
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제49조의6(벌칙) 제29조의3제6항
(제48조의2제8항제3호에 따라
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
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
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.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
1. 제11조(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, 제12조(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, 제16조의10에 따

| 조사 능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노동부렁으로 정한다. |
|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|
|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|
|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|
| 제49조의6(벌칙) |
| - <u>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</u> |
| 조의3제6항제3호 |
| |
| |
| |
| , |
|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|
|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|
|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|
| 제50조(과태료) ① |
| |
| |
| , |
| 1 <u>제48조의2제8항제1호</u> |
| <u>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</u> |
| |
| <u>제48조의2제8항</u> |
| <u>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</u> - |
| <u> </u> |
| |

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, 제17 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

- 2. 제29조의3제1항(<u>제48조의2제</u> <u>8항제3호</u>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금융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 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
- 3. 제44조(제48조의2제8항제4호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)에 따른 요구에 불응 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 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 를 제출한 자
- 4. 제45조제1항(제48조의2제8항 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)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 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・ 방해 또는 기피한 자

②・③ (생략)

| 2제48조의2제 |
|--------------------|
| 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 |
| <u>제3호</u> |
| |
| |
| |
| 3 (제48조의2제8항제4호 |
| 및 제48조의3제6항제4호에 따 |
|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|
| 다) 및 제48조의4제9항제1호- |
| |
| |
| |
| <u>.</u> |
| 4(제48조의2제8항 |
| 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|
| 를 포함한다) 및 제48조의4제 |
| 9항제2호 |
| |
| |
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|